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5. 21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 5. 21

다. 상정일자 : 제3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4. 5.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과장 이형상)

가. 제안이유

관내 거주 무주택 전세입주자 중 저소득층 영세민의 담보능력 부재로 전세자금 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골자

1) 채무 보증목적 :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2) 채무보증 내용

- 재 원 : 한국주택은행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 융자금액 : 885,000천원(세대당 500만원)
- 보증기관 :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 피보증기관 :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
- 보증기간 :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이 변제 완료시까지
- 상환조건 : 2년 이내 정기상환(이율 연리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관내에 주거하는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 신청시 구청장이 채무보증을 하여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융자를 손쉽게 하여 줌으로서 저소득계층의 사기를 양양하고 사회참여 기회와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